

WISE 경기지역센터 규정

□ 제정 : 2006. 9. 2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① 본 센터는 WISE(Women into Science & Engineering)경기지역센터 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.

② 본 센터에는 WISE 협력단, 이동과학교육단, 교재 및 교구 개발단을 둔다.

③ 본 센터는 수원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함)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우수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(초·중·고·대학생 및 소외계층 학생)간의 멘토링을 통하여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, 가치관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과학기술분야 전공을 유지 발전시키고, 초·중·고 여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공계 여대생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직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고자 한다.

제3조(주요사업) 본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행한다.

- ① 초·중·고 방문교실 및 보육원 등 특수교육기관 방문 실험
- ② 현장체험(연구소, 기업체, 과학관 등) 지원
- ③ 이동과학차량 이용 대단위 과학공연(과학쇼)
- ④ 실시간 과학실험 영상물 상영 및 제작
- ⑤ 과학체험 및 과학경진 대회
- ⑥ 과학캠프 운영
- ⑦ 과학교재 및 교구 제작 및 보급
- ⑧ 멘토와 함께 하는 멘티의 대학수업 체험
- ⑨ 기타 본 센터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4조(시행내규)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내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조직 및 임원) ① 본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단장 및 부단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단장 및 부단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재가를 받는다.

③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④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부서를 결정하여 둘 수 있다.

⑤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(임원의 직무) ①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내의 연구, 각 단, 인사, 관리, 재정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과 부단장 및 부서장은 센터장과 협력하여 분담된 업무를 관장하고 책임진다.

- 제7조(직원) ① 본 센터에는 전임교수, 연구조원, 행정직원, 기술요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직원은 센터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- 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, 운영위원은 교내·외 인사 중 10인 내외로 하고,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고, 부위원장이 보조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⑤ 운영위원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과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고, 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항을 의결 결정한다.
⑥ 본 센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내·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

제4장 재 정

- 제9조(재원) 본 센터의 재정은 경기도 이동버스, WISE 지원금, 경기과학멘토사업 지원금과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10조(예산 및 결산)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.
제11조(감사) 본 센터의 회계는 년 1회 이상 내부 및 외부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장 보 칙

- 제12조(운영규정 등) 본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운영규정과 관련법규, 시행세칙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.